

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---

# 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  
수석전문위원 서정호

#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24년 5월 31일

○ 회부일자 : 2024년 6월 3일

3. 제안이유

○ 민선 8기 주요 현안사업의 집중과 도정 성과창출의 가속화를 위한 정원 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○ 직급별 정원조정 내역 (안 별표 3)

- 일반직: 1,696명(변동 없음)

▶ 4급 이상(+2명), 5급 이하(-2명)

5. 검토의견

○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 8기 주요 현안사업의 집중과 도정 성과창출의 가속화를 위한 정원 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,

- 제417회 정례회 기간 중 개정되는 「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」에 따라 2과 1팀이 증가됨에 따라
- 직급별 정원에서 일반직 4급 이상 2명을 증원하고, 5급 이하 2명을 감원하는 것임.
- 이번 개정조례안은 「국가유산기본법」 제정과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전부개정에 따라 문화유산에 대한 업무가 증가하였으며, 충청북도만이 17개 시·도 중 문화유산과가 없어 해당업무에 대한 전담부서(문화유산과)를 설치하고,
- 외국인 정책을 전담할 부서인 외국인정책추진단을 부지사 직속으로 설치함에 따라,
- 조직개편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임: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끝.